

구미시 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0.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구미시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를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을 육성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적용범위 (안 제3조, 제4조)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업무와 기능 (안 제5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9조)

(1)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기관의 의무

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규정 (안 제11조)

마. 청소년수련시설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참고사항

가. 「지방자치법」

나.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

구미시 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실현하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수련시설의 시설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 시장 또는 수탁자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료”란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수련활동”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자발적이고 교육적인 활동으로 청소년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7. “청소년수련거리”(이하 “수련거리”라 한다)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적용범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련시설의 역할

제5조(업무와 기능) 수련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수련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3. 청소년의 일반 수련활동 지원사업
4. 가족단위 및 단체 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운영사업
5.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동사업
6. 기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

제6조(학교와의 협력) ① 수련시설에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수련시설은 당해 지역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은 당해 지역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청소년 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를 개발하는 때에는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수련시설의 운영

제7조(운영 등) ① 시장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미시설공단, 청소년관련학과가 있는 대학(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
2.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 부담능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이하 “위탁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기관에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대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운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관련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그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 등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기관의 의무) ① 위탁운영기관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청소년의 복지 증진, 수련활동 및 인성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계약 또는 협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기관은 사무의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사용료의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탁운영기관은 시설, 장비, 사용료 등을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련시설 내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망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⑤ 위탁운영기관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수련시설의 내부시설 변경 및 추가 설치를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추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무상 양여하여야 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운영기관이 제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운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운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운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 그 사유를 해지 예정 30일 전까지 위탁운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수련시설의 사용

제11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별표2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면제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 면제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면제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

6.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 면제
7. 시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면제
8. 각급 학교에서 학교교육과 연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50%감면

② 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서 실비(수련활동비, 냉난방료)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허가)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용허가 제한)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공익목적 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6조(관람료) ① 사용자가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관람권,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예매액 포함)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초과하였을 경우 사용료 외에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 또는 위탁운영기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등을 손괴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해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5장 수련시설의 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상태와 그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운영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지시,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위탁 중인 시설로 본다.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비 고
1	구미시 청소년수련관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333번지	
2	구미시 청소년수련원	구미시 해평면 해평리 487번지	

[별표2]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 이용시간

구분	시 간	비고
조기	06:00~09:00	
오전	09:00~13: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	
1일	09:00~18:00	

□ 사용료

1. 구미시청소년수련관

가. 시설 사용료

[단위: 원]

시설	기준	사 용 료		비고
		평일	토·일·공휴일	
시청각실	1일	55,000	70,000	
	오전	25,000	32,000	
	오후	28,000	35,000	
	야간	30,000	40,000	
체육관	1일	100,000	110,000	
	오전	40,000	45,000	
	오후	45,000	50,000	
	야간	50,000	60,000	
강의실(실당)	1일	8,000	10,000	

나. 부속설비 사용료

[단위: 원]

설비명		기준	사용료	비고
피아노		1회	5,000	
빔 프로젝트		1회	10,000	
조명시설	시청각실	1회	10,000	
	체육관	1회	10,000	
음향시설		1회	10,000	
냉·난방	시청각실	시간당	4,000	
	체육관	시간당	4,000	
	강의실(실당)	시간당	800	

다. 기타

- 오전, 오후, 야간은 각 1회 4시간 이내로 본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시청각실 및 체육관에 대해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구미시청 소년수련원

[단위: 원]

시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주차장 (야영장)	소형승용 1톤 미만 화물 12인승 이하 승합	소형 1대	800	체류1박마다 500원 추가징수
	1.5톤 이상 화물 13인승 이상 승합	대형 1대	1,500	
강당	평일	1회 1시간	10,000	냉난방비, 음향시설, 조명시설 포함
	토·일·공휴일	1회 1시간	11,000	
생활관	청소년	1인/1박	2,000	당일12:00~ 익일12:00
	일반		3,000	